
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80호(2023. 11. 27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 (장위동 66-196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

가. 해제지역

자치구	위치	제한면적(㎡)	비고
성북구	돌곶이·상월곡역세권 (장위동 66-196번지 일대)	87,489	성북구 공고 제2023-180호(2023.11.27.)

나. 해제사유 :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유가 소멸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함.

다. 해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제3항

라. 해제일 : 2026. 5. 21.

2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3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02-2241-2784)으로 문의바랍니다.

■ 관계도면

